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203 제출연월일: 2024. 6. 28.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 주도의 다양하고 유연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가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단체가 자율규제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자율규제 활동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자율규제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11(자율규제) ①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기술발전 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 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정하여 시행하는 활동(이하 "자율 규제"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효율적인 자율규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율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자율규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1. 자율협약의 제정 · 개정 및 시행
 - 2.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자율점검 및 개선
 - 3. 이용자 불만사항의 처리
 - 4.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디지털 역량 강화
 - 5.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의 공개
 - 6. 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활동

- ④ 정부는 자율규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율규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자율규제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 2. 자율규제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3. 그 밖에 자율규제 확산에 필요한 사업
- ⑤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단체는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연 1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8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2조의11(자율규제) ① 부가통
	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
	단체는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
	기술발전 등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스스로 정하여 시
	행하는 활동(이하 "자율규제"라
	<u>한다)을 할 수 있다.</u>
	②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
	신사업자단체는 효율적인 자율
	규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율기구를 설치ㆍ
	<u>운영할 수 있다.</u>
	③ 정부는 자율규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
	동에 대해서는 그 활동을 촉진
	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u>수 있다.</u>
	1. 자율협약의 제정・개정 및
	<u>시행</u>
	2.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한 자
	율점검 및 개선
	3. 이용자 불만사항의 처리
	4.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제

고 및 디지털 역량 강화

- 5.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의 공개
- 6. 그 밖에 부가통신사업의 건

 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활동
- ④ 정부는 자율규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자율규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자율규제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 2. 자율규제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3. 그 밖에 자율규제 확산에 필 요한 사업
- ⑤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 신사업자단체는 자율규제와 관 련하여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의견을 밝힐 수 있 는 기회를 연 1회 이상 제공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정부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단체의 자율규 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① ~ ③ (생 략)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u>보고</u>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 4. (생 략)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 업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를 한 경우 해당 부가통신사업 자의 자율규제 활동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을 감경할수 있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8조(통계의	보고	등)	1	~	3
(현행과 같음	을)				
4					

 제축	 	

-----.

1. ~ 4. (현행과 같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22조의11 제3항	정부의 자율규제 촉진·지원 시책 마련(재량규정)
2	제22조의11 제4항	정부의 자율규제 확산 사업 추진(재량규정)
3	제22조의11 제6항	정부의 자율규제 활동 지원(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제22조의11 제3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2	제22조의11 제4항	
3	제22조의11 제6항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정부가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 활동을 촉진 또는 지원하는 시책이나 확산 사업을 마련·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민간의 자율규제 활동이 별도 법적 근거 등 없이 임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 대상, 방식,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합리적인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참고로 현재 임시로 구성되어 자율규제를 논의하고 있는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22.8월~)」의 분과 구성과 논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구성도 >

데이터 사무기	혁신공유·거버넌스	갑을 분과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분과	분과	경을 도치	분과

분과	참여 사업자	
데이터·AI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지마켓, 당근마 메타		
혁신공유·거버넌스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힐링페이 한국신용데이터, 구글, 메타, 로앤컴퍼니, 직방		
갑을	네이버, 카카오, 쿠팡, 11번가, 지마켓, 무신사, 롯데쇼핑,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소비자·이용자	네이버, 카카오, 쿠팡, 11번가, 지마켓, 무신사, 롯데쇼핑,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주요 논의 경과 >

- (데이터·AI)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마련(5.11.) 등
 - * 검색노출순서 결정 및 추천기준 공개, 이용사업자에게 대가지불의 영향 설명, 이행점검 등
- o (혁신공유·거버넌스)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 8대 원칙*」 준수 다짐 선언(5.11.) 등
 - * ¹개방연결 확대, ²공진화 추구, ³포용성 강화, ⁴사회문제 대응, ⁵기회의 확장, ⁶신뢰체계 구축, ⁷다양성 증진, ⁸안전성 제고
- (<mark>갑을)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방안을 발표(</mark>'23.3.6.)하고, 오픈마켓 분야에서 플랫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자율분쟁 조정방안 마련(5.11.)
 - ※ 입점약관 필수기재사항 마련,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입점사업자와의 상생·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
- o (소비자·이용자) 오픈마켓 분야 소비자 집단피해에 대한 신속 대응방안 마련(5.11.)

Ⅳ. 작성자

Ο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기즈처 기무기	기기 등 다기다 프레 프디기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김준협 사무관	김장호 디지털플랫폼팀장	이도규 통신정책관

O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준협	044-202-6635	mangel94@korea.kr